

수산식품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지원규모 : 총 62개사 내외

구 분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지원업체 (연속+신규)	22개소 내외	26개소 내외	14개소 내외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매출액 1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지원한도	50백만원	100백만원	220백만원
	* 지원한도 내 예산 자율 신청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24.10.31 * 정산 신청 '24.10.31일까지		

* '23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참가기업 중 연속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업체 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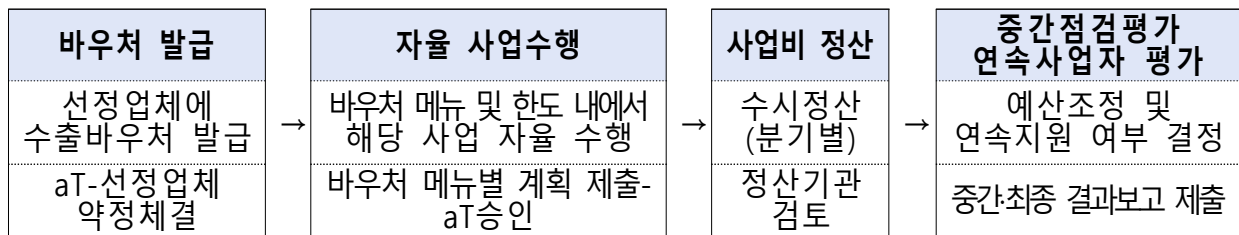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유의사항

- 총 사업비 내 국고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부가가치세(VAT)는 참가기업 부담
- 최종 선정업체는 사업신청서에 기반한 메뉴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 추진
- 배정예산은 평가과정을 통해 신청예산 대비 조정 가능. 또한 7~8월경 중간평가를 통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가용예산 발생 시 차순위 예비사업자 신규 배정 가능

□ 사업내용

○ 추진절차



○ 지원내용(사업메뉴판)

단계	사업메뉴	주요 지원 내용
① 수출 준비	해외시장조사	■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유료보고서 구입, 참가업체 해외시장 조사비용 등
	수출실무 교육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발 ■ 포장 동판, 금형 제작
	수출관련 검사비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샘플통관운송비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송부 시 운송·통관비 지원
	무역애로 해소	■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수출 포장재 제작	■ 수출용 수산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② 해외 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 등
③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웹페이지 등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명 IP 라이선스 비용 등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자율제안 사업(신규) * 고도화 업체 대상	■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사업계획 aT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지원)

* 단계별,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

○ 바우처 메뉴별 예산집행 한도

구분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한도	①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2천만원)	①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3천만원)	①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4천만원)
	② 해외진출단계 ③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2천만원) - 미디어 홍보(2천만원)	② 해외진출단계 ③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3천만원) - 미디어 홍보(3천만원)	② 해외진출단계 ③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4천만원) - 미디어 홍보(4천만원) - 자율제안 사업(2천만원)
	지원한도 : 50백만원	지원한도 : 100백만원	지원한도 : 220백만원
의무 사항	(공통) 전문 컨설팅(aT 서비스 제공) 참여 의무, ESG 연계 사업 추진 의무(1건 이상)		
	• <수출실무교육> 의무	• 유망상품화(신제품개발) 의무	• 유망상품화(신제품개발) 의무 •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메 뉴에 50% 이상 추진 의무

- * 특정 1개 메뉴에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단계·메뉴별 예산 한도는 중간점검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요 시 조정 추진
- * 의무추진항목 착수 및 진척도는 '25년 연속사업자 평가 시 반영
- * 판촉사업(유통업체 및 온라인판촉) 선택 시 국고지원금의 200%이상 금액 수출의무
- * 협약 체결 후 사업포기 시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2년간 사업 참가 제한
- *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 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정산기준은 별도 안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4.10.31까지

- * 모든 사업은 '**24.10.31까지 수행 완료**(위탁 시 계약기간 등 수행업체 서비스 수행 완료 기준)되어야 하며 '24.10.31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 단,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24.10.31까지 사업 수행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aT 사전 협의 및 검토 후 연장 승인을 득하고 '24.11.15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정산 인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2.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KOTRA),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농림축산식품부(aT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일 기준 타 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중복 선정된 기업('24.2월중 협약 체결 예정)
 - * 바우처 운영기관별 사업자 중복 선정여부 확인 예정
 - '22-'23년 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포기 및 미정산 업체
- ※ 해양수산부 유사사업간(aT 수산물 현지화지원사업, 수협 유망상품화 등) 중복 선정 불가하며, 국제인증 취득, 종합/개별 박람회 등 개별 사업 참가업체는 바우처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 간 유사 항목 중복 정산 금지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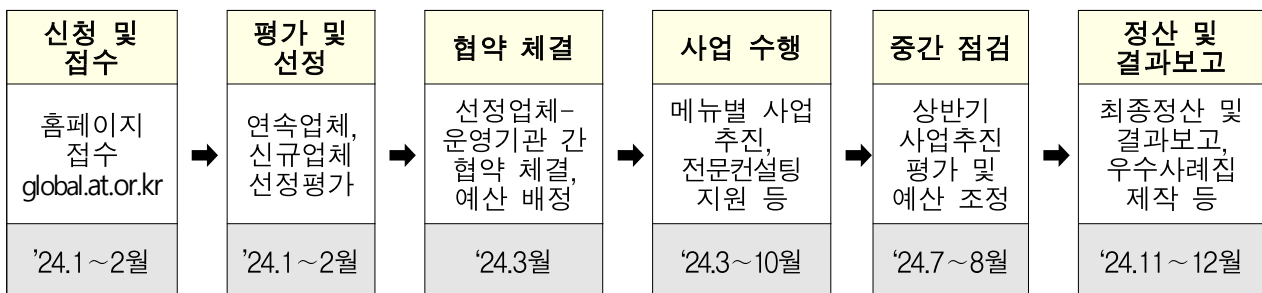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자가 역량진단 실시) → 상단메뉴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 2024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 온라인 접수 원칙(우편 접수, 쿠팡, 택배, 방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4. 1. 29 ~ '24. 2. 16 (18:00限)

□ 신청서류

- ① (필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인지조서(양식)
-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 ③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조합 등은 생략 가능)
- ④ (필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반서류(온라인 or 오프라인/기 제출업체 생략가능)
- ⑤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수출 실적증명원(최근 3개년)
 → 공통서류 간소화 제출을 위한 aT 'One Pass(원패스)' 시스템을 통해 전산 조회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가능하며, 첨부파일 정보 하단에 있는 '원패스 공통행정서류 시스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원패스로 파일 등록 시, 공통 필수서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 (첨부) aT One Pass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이용 안내 매뉴얼
- ⑥ (선택)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증빙(해당기업)
- ⑦ (선택)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기타 가점 해당사항 증빙(해당기업)

□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및 항목

- (1차) 서류심사(계량/40점) : 참가신청서, 증빙서류 검토 **3배수**

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출경쟁력	○ 수산물 수출금액 * 최근 3개년('21 ~ '23년) 평균	15
	○ 수출금액 증가율(%) * 최근 3개년 평균	10
재무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10
제품역량	○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	5
계 (* 가점 적용 시 최대 44점)		40

인증 및 특허 예시

(국내) ISO, HACCP, GMP, 친환경인증(유기수산물 등), 수산물품질인증 등
(해외)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러시아 EAC, 러시아CU, KOSHER, SQF2000, IFS, BRC, 중국보건식품, Global-GAP, 일본 AS,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등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용 인증
* 인증 및 특허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개수로 산정

- 가점사항(최대 4점)

가점	세부사항
1개당 2점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최근 3년간, '21~'23)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1~'23)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1개당 1점	·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 가점(1개당 1점) 내 세부사항 중복 인정 불가

○ (2차) 비계량평가(60점) : 참가계획서, **업체별 PT발표(20분 내외)**

- * 1차 계량평가 결과 상위업체(3배수)에 한해 온라인(화상) 또는 오프라인 평가회 진행 (평가 진행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 평가위원회는 수산식품 수출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적정성, 제품경쟁력, 수출역량, 성과목표의 적정성, 정책부합성 등 종합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중장기 계획수립 적절성	15
제품경쟁력	○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개발상품 시장경쟁력 포함) ○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 목표국 시장적합성	15
수출역량	○ 해외시장 수출 경력 ○ 수출 전담인력(해외영업팀 등) 보유 ○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10
성과목표	○ 성과목표 도전성,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10
정책부합성	○ 수출품목의 국산 수산물 원재료 사용, HMR제품 개발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적합성	10

☐ 선정발표 :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처

☐ 운영기관 : aT 수산사업단

- 담당자 : 최호선 차장(061-931-0852 / noradona@at.or.kr),
양세희 대리(061-931-0856, 0858 / sheep3@at.or.kr)

7. 선정 관련 기타 유의사항

- ☐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관련 소요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기한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함
-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